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. 5. 26 선고 2014가단711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5. 12.

판결 선고 2015. 5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전북 부안군 C 전 17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13㎡ 지상 비닐하우스 13㎡를 철거하고, 위(가) 부분 토지 13㎡를 인도하고,
나. 전북 부안군 C 전 17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지상 저온저장고 4㎡를 철거하고, 위 (나) 부분 토지 4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원고 소유의 토지'라고 한다)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13㎡ [이하 '이 사건 (가) 부분 13㎡'라 한다] 지상에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가,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4㎡ [이하 '이 사건 (나) 부분 4㎡'라 한다] 지상에 피고 소유의 저온저장고가 각 위치하고 있다. 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(가) 부분 13㎡, 이 사건 (나) 부분 4㎡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, 이 사건 (가) 부분 13㎡ 지상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 13㎡를 철거하고, 이 사건(가) 부분 13㎡를 인도하며, 이 사건 (나) 부분 4㎡에 설치된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, 이 사건(나) 부분 4㎡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정훈

별지